

2016학년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계획

2016. 3.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I. 근 거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 2016 주요 업무 계획(전북교육 2016-016)

II. 목 적

-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공정한 사안처리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 전 사회적 대응역량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최소화

III. 현황 및 실태분석

1 현황

가. 일반 현황

1) 학교 급별(괄호)안은 성폭력 현황)

연도	폭행		금품 갈취	괴롭힘 따돌림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합 계
	단순	집단								
2013	4	3	0	0	0	0	2	0	0	9
2014	4	2	0	0	0	0	2	1	0	22
2015	5	1	2	0	1	2	1	0	0	12
소계	13	6	2	0	1	2	5	1	0	43

2) 폭력유형별

구 분	연도	폭.행		금품 갈취	괴롭힘 따돌림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기타	합계
		단순	집단								
초	13	0	0	0	0	0	0	1	0	0	1
	14	1	0	0	1	0	0	2	0	0	4
	15	0	0	0	0	1	0	1	0	0	2
	합계	1			1	1		4			7
중	13	1	0	0	0	0	0	0	0	0	1
	14	3	4	0	0	0	0	2	0	0	9
	15	1	0	2	0	0	0	0	0	0	3
	합계	5	4	2	0	0	0	2	0	0	13
고	13	3	3	0	0	0	0	1	0	0	7
	14	4	2	0	0	0	0	2	1	0	9
	15	3	1	1			2				7
	합계	10	6	1	0	0	2	3	1	0	23

나. 실태분석

- 초등학교 학교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인과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음.
- 신체적 폭행에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눈에 띄지 않는 유형의 폭력으로 변화.
- 사안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재심과 민원이 증가.
-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

IV. 추진방향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교육적인 방법의 학교폭력 해결

인성교육 중심 학교 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	---------------------	----------------------	---------------

V. 중·장기 추진계획

- 민주사회성(인성) 교육으로 학교폭력 최소화
-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으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 관계 회복

VI. 주요 추진 계획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교육과정 내에서의 인성함양 교육
 - 수업혁신을 통한 인성함양(토론·토의 수업, 협력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 교육과정 내의 학교폭력예방교육(학생, 연 4시간 이상) 실시
 -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담임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
 - 학교폭력예방 문화 조성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운영(학교)

□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200여교 지원 예정(도교육청, 4월)
 - 또래활동(또래상담, 또래 조정 등) 및 자치법정 운영(학교)
 - 친구사랑주간(학교, 3월)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주제 선정 운영
- 인성교육 실천 주간(학교, 5월, 9월)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인성교육 관련 주제 선정 운영

□ **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53교 지원 예정(도교육청 선정 완료), 미 선정 학교도 운영 가능
 - 도란도란 홈페이지 자료 활용(<http://www.dorandoran.go.kr/> 자료실) 운영
- 연극, UCC 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30여교 예정(도교육청, 4월)
 - 어깨동무 학교와 통합 운영
 - 연극제작, 연극, 역할극, UCC 제작 등
- 역할극 외 자치활동 프로그램 지원
 - 초, 중 3,000학급(학급당 100,000원), 희망학교 신청(도교육청, 3월)
 - 역할극, 교육연극, 아빠캠프 등 자치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연중, 방학 제외, 경찰청)
 - 체험 희망 문의 연락처
익산청소년경찰학교(☎063-830-0728), 전주완산청소년경찰학교(☎063-280-0338)
 -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경찰학교'운영

□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 **신학기 대비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학교, 교육지원청)
 - 3월, 9월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발생 시기 예방활동 강화
 - 상담주간, 친구사랑 주간 운영(3월, 9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별 교육 실시
 -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 전개(어깨동무학교의 또래활동과 연계)
-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 3교 지원(도교육청, 7월 예정)
 - 선플달기 운동 전개(학교)
-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학교)

-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추진과제 2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 보호인력 운영

- 학교전담경찰관(부안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5명 배치)
 - 학교폭력예방활동, 상담, 사안처리 조언 등
 - ※ 전담경찰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창 등, 배너 등 제거
-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 5명(초 2교, 중 1교, 고 2교)배치
 - 초등: 변산초, 줄포초
 - 중등:부안중
 - 고등: 부안제일고, 부안여고
 - 지역사회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예방활동, 상담, 사안처리 조언 등
-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 5명(초 2교, 중 1교, 고 2교)배치
 - 초등: 변산초, 줄포초
 - 중등:부안중
 - 고등: 부안제일고, 부안여고
 - 지역사회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 배치
 -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 초·중·고등학교 99교, 1교당 민간경비 2명 배치

□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 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CEPTED)학교 운영(도교육청, 9월)
 - 학교 내외 쾌적한 환경 조성, 범죄 유발 환경 정리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효율적인 관리
 -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 학교시설 감성화

○ 학교시설 감성 공간 프로젝트(교육청, 5월)

- 학생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20교)

○ 학교 안 시설, 공간 정비(학교, 연중)

-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교육지원청, 학교, 연중)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도교육청)

-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 사회적 배려 학생

- 희망학교에 예산 지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 구성

소 속	직위(급)	성 명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지순
부안동초등학교	교 사	오명훈
행안초등학교	교 사	박수연
하서중학교	교 사	심충보
부안고등학교	교 사	박민규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이승재

추진과제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대응역량 강화**

조기 감지·신고체계 강화

○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노력

○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참여(4월, 10월)

- 대상: 초4~고3

○ 학교폭력 익명 신고함 설치 운영(최소 매주 점검)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도란도란 사이트 상담실 운영·홍보(학교당 1~2명)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교육지원청, 3~5월)

-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신장으로 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구성은 전체 위원(5~10인)의 과반수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 선출(3월, 학교교육과정설명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배치·운영(15명, 교육지원청, 연중)
 -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안처리 상담 및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교, 학기별 1회)
 -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
-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교육지원청, 학교, 2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점검·지원단 운영(교육지원청, 연중)
 - 교육지원청별 구성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지원
-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지원(도교육청)
 - 교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7월)
 - 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어깨동무학교 선정 학교 중 대체강사 희망 학교, 4월)
 - 학교폭력예방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교원 정원의 40%, 11월)
 - 장관(11월, 6명), 교육감 표창(170명, 5월)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유공 포상

추진과제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내실화

- Wee프로젝트 운영(Wee클래스 238교, Wee센터 16개소)
 -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상담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 및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 전문상담인력 확보(92명) 및 교원 연수 확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시스템 운영
 - 학교안전공제회(☎239-3648) 운영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063-276-8804)
- 학교폭력 사후 치유(예정)
 - 피해학생, 학부모를 위한 마음치유센터(☎063-271-0117) 운영
 -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원·운영
 - 청소년꿈키움센터(☎277-9890, 전주YWCA☎224-5501)

□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강화
 - 피해학생 보호, 재발 방지, 담임 및 소통 중심 생활지도 강화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기관 운영(예정)
 - Wee클래스, Wee센터, 위탁대안교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꿈누리교실, 전주YWCA,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 **관계회복 위한 프로그램 강화**

-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35명, 1~2월)
- 학교 요청 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문상담사, Wee센터 상담사

추진과제 5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가정과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밥상머리 교육(가정)
- 학생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계획 홈페이지 게시(교육지원청)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아동안전지킴이 414명(경찰청)
 - 아동범죄 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
 - 배움터지킴이와 연계, 공조(협의회, 8월)
-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합동생활지도 지원(교육지원청, 연중)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합동생활지도반 운영(교육지원청)

VII. 기대 효과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로 학교폭력 감소
-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조치로 학교로 복귀
-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로 학교폭력 관련 불만 해소

성 범죄자에 의한 성범죄예방 대책

1. 목적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에 의해 유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유괴자에 의해 유인이 되거나 자발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의 낯선 사람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보다 면식범에 의한 사건발생률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성폭행 가해자 연령도 점차 저연령화 되어 13세 미만 아동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성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꼽히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아이들은 통제 없이, 쉽게, 방대한 양의 음란물이 여과 없이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이 성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강압적 성행위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에 인근 성범죄자로부터 우리의 자녀 및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의미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성폭력이란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 ▶ 법률상의 성폭력 개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률상 성폭력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2)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3)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4)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5)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8)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9)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10)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의 그 미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성폭력 행위의 구분

접촉행위	비접촉행위
<p>* 만지는 행위 ex) 청소년의 생식기 등 몸을 만짐 청소년의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 구강 성교 및 성교 등</p>	<p>* 만지지 않는 행위 ex) 청소년에게 성적인 말을 건넌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여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 영함</p>

성에 대한 표현이나 감정 또는 가치판단 등은 한 개인 스스로를 표현하고 규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행동에 관한 선택 및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원치 않는 성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결정권을 성적 자결권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적 자결권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청소년 개인의 성적 자결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들을 정리하면, 강간, 강간치상 및 강간치사, 간음, 추행, 학대, 음란물 촬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행위별로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및 피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 하면 또래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지인에 의한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구분에 의한 성폭력 유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또래 성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경우의 성폭력을 의미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끼리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까운 사이이거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교제 중인 학생들 간의 데이트 성폭력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를 들치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훑쳐본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 및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까지가 모두 또래 성폭력의 유형에 해당되는 모습들이다.

2) 사이버 성폭력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글자 및 부호), 이미지(음향 및 영상물)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불쾌감, 수치심, 두려움)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사이버 성희롱,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사이버 음란물 게시로 분류할 수 있다.

3)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성폭력 유형으로 이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평범하게 생겼거나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상을 가진 가해학생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는 발생 장소가 가해학생의 자택, 자주 다니는 길, 학교 근방, 놀이터 등 일상적으로 자주 오고가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지인에 의한 성폭력

이 유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학생 측이 부모님의 지인이라 자주 집에 드나들었다던가, 이웃이라거나 친구의 가족인 경우 피해학생은 이들을 익숙하게 생각해서 방심할 수 있다. 가해

학생도 ‘아는 사이’ 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학생들을 협박하거나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등 지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5) 친족에 의한 성폭력

현행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는데,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에 의해 성추행 및 강간 등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약 30% 가량이 바로 친족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성폭력 유형이다. 또한 가해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며, 가해학생은 의부나 친부, 남자 형제 등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가족들 내에서는 성폭력 사실을 숨길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재차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한다.

3. 예방대책

가. 관내 각급 학교 정보제공

- 1) 각급 학교에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사이트 홍보
- 2) 학교(성)폭력예방교육 강화

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순찰지도강화

- 1)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합동 순찰 강화

가) 불안경찰서, 지구대

나) 불안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성폭력예방담당 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다) 불안군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라) 기타 유관지역기관(단체)

- 2) 캠페인을 통한 예방강화

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사이트 홍보(<http://www.sexoffender.go.kr/>)

나)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다) 학교(성)폭력예방에 대한 학부모 안내문 발송

4. 성폭력 피해예방 안내

지속적으로 아동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특성상 정확한 발생률의 파악은 힘들다. 아동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의 위협이나 비밀유지약속, 피해특성상 잘못된 내적인 신념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밀스러운 것과 놀라운 것, 강화

되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함으로써, 나쁜 비밀은 꼭 어른들에게 말해서 알리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기술, 갈등해결, 주장하는 능력 같은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행동적인 반응법을 강조하여 ‘NO’라고 말할 줄 알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도망가기와 같은 실제의 대처방법을 연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신고기관과 대처방법을 알면 피해 상황 시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 또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5. 성폭력 위기 상황 시 대처 방법

가. 만원 지하철에서 만지는 상황

- 1) 조심스럽게 행위를 중단하라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한다.
- 2) 가방 등의 소지품으로 몸을 가린다. 그래도 계속되면 상대방의 몸을 꼬집거나 신발로 발등을 밟으면서 주의를 촉구한다.

나. 학교 주변에서 성기 노출 시

- 1) 너무 심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면 가해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 2)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 선불리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오히려 가해자가 먼저 피한다.
- 3) 경찰에 신고한다.

다. 강간을 시도하려는 치한을 만난 경우

- 1) 신체적인 조건이 열세인 피해자일 경우 물리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물리적으로 심하게 저항할수록 치한은 더 더칠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치한에게 “요구에 응해 주겠다.”는 언질을 주면서 상황을 피하는 돌파구를 찾는다.

라. 이상한 음란 전화를 받은 경우

- 1) 곧바로 끊고 또 다시 걸려 오면 전화선을 일시적으로 뽑는다.
- 2) 가해자는 전화를 받는 여성이 전화 내용으로 불쾌해하거나 무서워한다고 느꼈을 때 만족이나 쾌감을 경험하므로,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처럼 끊는다.

6. 성폭력 피해아동 징후

가. 일반현황

성폭력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한 아이의 말은 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거나 가해자의 협박이 두려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서툰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아동과 가까이 있는 친족일 경우 더욱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신체에 성폭력의 흔적이 남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알아두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피해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아동 모두에게 이러한 징후가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신체적 징후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성학대의 가능성이 있으나 신체적 징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체적 증상: 성병, 임신
- 생식기 부분: 질에 분비된 정액, 처녀막 손상, 질의 상처, 외음부 상처(질 주변의 멍, 열창), 음경이나 음낭의 상처 등
- 항문 부분: 괄약근 손상, 멍이나 찰과상, 항문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의 열창, 홍진, 항문주변 정맥 충혈, 항문 반사근육 팽창
- 구강 부분: 입천장의 손상, 인두임질
- 가슴 부분: 유두 및 유방의 상처(멍, 열창 등)

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 표현

아동이라도 성교육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성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성행위를 통해 알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에게서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볼 수도 있습니다.

- 어린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는 조숙한 성지식을 흔히 무심코 내뱉음
- 성과 관련된 행동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함
- 자기보다 어리거나 순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행위, 또래와의 성행위
- 나이든 사람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거나 몸짓을 보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라.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어린 아동의 경우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폭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시로 마주치는 친족인 경우 더욱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피해아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보이거나, 잠을 자주 깨기도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오줌을 싸고, 손가락을 빠는 등 나이보다 어린 퇴행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 감정조절을 못하고 과잉행동

친구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학교 또는 유치원 등에 가지 않으려

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른이나 교사에게 보호를 청하며 필요이상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지나치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며, 분노를 폭발하고, 문을 꼭꼭 잠그는 등의 행동, 특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산만함, 꼬챙이나 막대기로 자신을 찌르고 쏘는 등의 자해행동 등 갑작스럽게 눈에 띄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 장기적인 후유증상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은 일시적인 후유증을 겪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후유증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심리적 후유증: 공포, 불안, 강박행동, 분노와 우울증, 특정 인물 또는 장소와 물건을 무서워하거나 회피, 퇴행, 악몽과 불면, 남성에 대한 혐오감, 자기 학대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후유증: 질과 회음부의 손상, 성병, 두통이나 복통, 골반동통, 성기 이상, 피해가 장기화되면 사춘기로 가면서 임신과 낙태, 불임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성적 후유증: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성에 대한 공포, 혐오, 과도한 성적 호기심, 성불감증 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적 후유증: 사회활동 기피, 알코올이나 마약의 탐닉 등 사회적응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7. 피해자 지원

가.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 사건이 발행했을 때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은 중요하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 등에 포장하여 보관
- 48시간 이내에 피해상황 그대로(목욕을 하거나 씻지 않은 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료검사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
- 피해자의 심리적 불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겪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불안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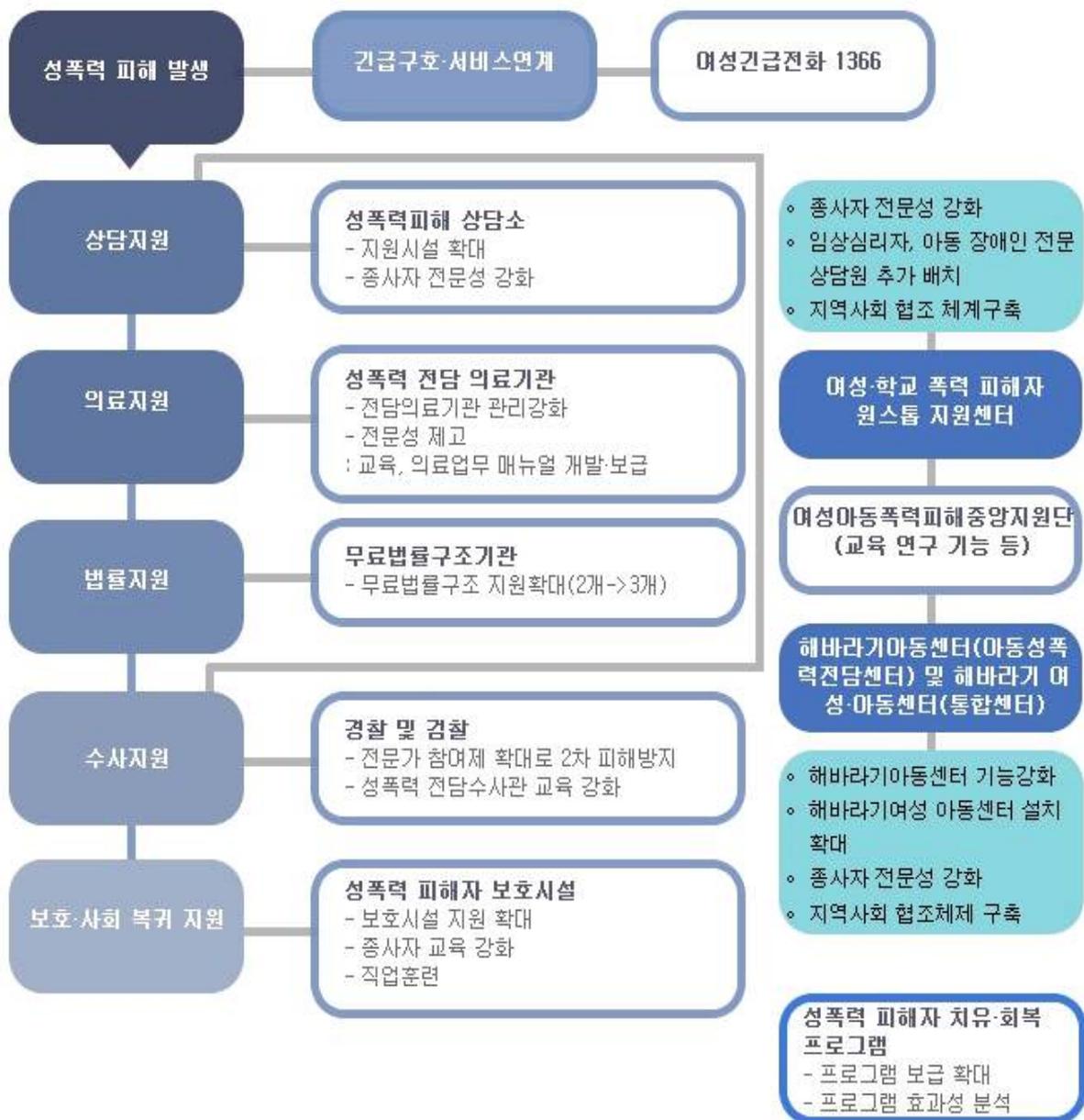
나. 보호자의 행동 가이드라인

-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아동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 피해아동이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피해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여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피해아동의 질문을 피하거나 사건을 잊도록 강요하지 말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말

- 네 잘못이 아니야
- 네가 이야기 해줘서 기뻐
- 우리 가족의 문제는 네 잘못이 아니야
- 널 보호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 네가 안전하도록 보호해 줄게
- 그 사람이 너를 속인거야

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8. 성폭력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 가. 큰 소리를 퍼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나. 호루라기를 불어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 다.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싫어요.’ 또는 ‘안 돼요.’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 라.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예로 물어뜯고, 발로 차고, 할컾다.
- 마. 강간을 피할 수 없다면 가해자를 할퀴거나 옷자락을 찢어서 증거물을 남긴다.

9. 전문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긴급상담 및 긴급보호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7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전북해바라기센터 (구, ONE-STOP 지원센터)	278-0117	24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 응급의료지원 및 여성경찰관이 상주하여 수사지원, 무료 법률자문 제공
해바라기센터(아동)	246-1375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김제성폭력상담소	546-8366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일시보호, 관련기관 연계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심신회복 지원과 인권보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현장상담센터	682-2897	성매매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직업훈련, 자활·자립 지원을 통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조속한 회복 및 사회복귀 유도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

10. 상담 시 유의사항

가. 피해학생 상담

- 상담 시작 전 반드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약속한다.
- 상담 장소는 피해학생이 가장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장소로 한다.
- 피해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 피해학생이 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 피해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피해학생이 말로 하기 어려워 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학생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 피해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 여성긴급전화 및 긴급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개입과정이나 주의사항, 긴급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나.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 학생에 대한 조치

- 우선,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성폭력은 일종의 폭력이고 특히 매우 조심스러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학생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 시켜야 한다.

11. 관련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대검찰청	http://www.sop.g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기관명	홈페이지
범죄예방 정책국	http://www.cppb.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www.kyci.or.kr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http://www.wesay.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One-Stop 지원센터	http://www.smonestop.or.kr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주세요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6)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낯선 동네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로 보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 성범죄자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기능으로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1시간을 설정하면 1시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검색하려면, 조건검색을 클릭 → 학교 반경 1km 클릭 → ○○어린이집 입력 후 클릭 → 이름을 터치합니다.
- ‘성범죄자 알림e’앱은 우편고지서에 게시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쉽게 설치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 성범죄자알림e 설치, 이용 절차



① '성범죄자 알림e' 검색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